Ⅰ. 반론보도청구사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9.자 판결 (2005카기1937)
서울고등법원 2007. 1. 10.자 판결 (2005나100290)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10일 진○○이 탁○○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신청인은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17면에 『진□□ 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라는 제목으로 진□□ 목사가 신청인의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면서 "고발 주체를 '안○○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측'이라고 한 표현이나, '혐의를 씌워'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한 오기로 역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반론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재판부는 2005년 11월 9일 신청인과 사건 기사 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5년 7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5서울중재242)을 하여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2005카기193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진 ○ ○

피 신 청 인 : 탁 ○ ○

변 론 종 결 : 2005. 10. 26.

판 결 선 고 : 2005. 11. 9.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현대종교의 첫 면 우측 상단부에 별지 제1 기재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월간 현대종교의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이름은 1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1일 금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외 진□□은 2005.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신청외 진△△ 등과 공모하여, 위 진△△의 딸인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을 기도원과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17면에는 '진□□ 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05. 7. 11.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 7. 25. 위 중재신청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는 불성립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월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를 발행함에 있어, 위 진□□ 목사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한 위 진□□ 목사가 마치 상담시 성경공부만을 하고, 신청인이 위 진□□ 목사에게 혐의를 씌워 고소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아버지만이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히려 위 진□□ 목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의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6조),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혐의를 씌워 고소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문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아니라 안○○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측이 혐의를 씌워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과 위 기사 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과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라는 부분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하는 위 진□□ 목사의 주장을 인용표를 붙여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위 진□□ 목사가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용 부분만으로 곧바로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곽 종 훈
판 사 김 양 훈
판 사 이 상 우

〈별지 1〉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5나100290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항 소 인 : 진 ○ ○

피신청인, 피항소인 : 탁 ○ ○

제 1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카기1937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1. 1.

판 결 선 고 : 2007. 1. 10.

주 문 :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현대종교의 첫 면 우측 상단부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월간 현대종교의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이름은 1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1일 금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정○○, 오○○(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기독교 단체인 '안○○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이하 '안증회'라고 한다)의 신도이다.

나. 신청인 등, 안증회 목사 김○○, 안증회 신도 등 72인은 2001. 4. 경 김○○을 대표로 하여 '진□□ 목사가 신청인 등을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진□□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진□□은 '신청인은 부(父) 진△△, 정○○의 남편 송○○, 오○○의 남편 정△△으로부터 신청인 등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신청인 등을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2003고단1797)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5. 4. 13. '진□□이 신청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하지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등을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월간 현대종교라는 종교관련 잡지의 발행인으로, 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17면에 '진□□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A'는 기사 내용상 신청인이다.

마. 이에 신청인은 2005. 7. 11.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률 및 반론보도청구의 제한

가. 적용 법률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 등에 관한 조항은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5. 7. 27.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나, 언론중재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간법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

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정간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정간법이다.

나. 반론보도청구의 제한

정간법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은 진□□이 개종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진□□이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은, 그 앞 부분에서 진□□이 신청인에 대한 개종강요 및 감금·감금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그중 감금·감금교사 혐의는 무죄로 개종강요 혐의는 유죄로 선고되었다는 취지를 적시한 후,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는 진□□의 의견을 전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반론보도로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즉 진□□이 신청인에게 개종강요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기사 중에 포함된 '법원에서 진□□의 개종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보도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반론보도청구로 동일한 사실을 주장을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중 "안증회측은 … 혐의를 씌워"라는 부분에 관하여, 진□□을 고발한 사람은 신청인 등 개인 자격의 72인이지 안증회가 아니며, 혐의를 씌우는 것도 수사기관이지 고발인이 아니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비록 안증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진□□을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72인의 고발인 중 대부분이 안증회 신도이고 대표 고발인은 안증회 소속 목사인 점, 위 고발은 안증회 신도인 신청인 등에 대한 개종강요 혐의에 대한 고발인 점, 고소(고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한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고발 주체를 '안증회측'이라고 한 표현이나, '혐의를 씌워'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한 오기로 역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 부분에 대한 반론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중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신청인의 아버지인 진△△는 거짓 증언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의 남편 송○○, 오○○의 남편 정△△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사 부분은 진□□이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송○○, 오○○과 관련하여 한 진술을 그대로 전재한 것에 불과하며, 진□□의 그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진□□의 개종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이 이 사건 기사에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는 이상, 비록 신청인의 아버지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용 구
판 사 이 승 한
판 사 장 일 혁

〈별지 1〉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자 판결 (2006나112566)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11월 23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면서 신청인 여○○은 피신청인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반론보도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동아일보사등이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으나, 3심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56~95면 참조, 2~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13~2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1256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항소인 :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 광 명, 최 세 련, 이 춘 원, 김 형 근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7. 1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 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⑴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⑵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1-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소을나 제4호증의 2, 소을나 제5호증의 2, 소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1) 일간 「동아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 폭력배 출신 기업가', '○○○○○파 두목 출신', '1992년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하고, 신청인이 2000. 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2000. 7.경에도 D증권사를 통해 ○○○전자와 ○○○

○○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0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을 통해 이용호의 정관계 배후 및 비호세력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가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용호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2) 월간 신동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신동아」2001년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 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중앙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중앙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을 '○○○○○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폭력조직 ○○○○○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었고, 오래전부터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두터운 인맥을 쌓아 온 이른바 '마당발'로서 이용호의 정·관계와 검찰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용호와 K상고 동창으로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홍○○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 의원이 신청인의 구속 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300억 원대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이용호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나.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1-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2. 2. 1. 신청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별지 2-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2. 2. 9.「동아일보」제4면에 별지 2-1 반론보도문을,「신동아」2002년 3월호 220면에 별지 2-2 반론보도문을,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2. 2. 10.「중앙일보」제4면에 별지 2-3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1-1, 2, 3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원보도가 없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당원의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

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소을나 제13호증, 소을나 제14호증의 6, 7, 8, 13, 소을나 제15호증, 소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력조직인 광주 ○○○○○파의 두목급 수괴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신청인은 "2000. 1.경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 횡령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 5.경 심○○의 고소 및 강○○의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20억 원을 주면 동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용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이용호를 대리하여 심○○ 등과 화해 및 고소 취소 등을 알선한 결과, 심○○이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강○○으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자, 이용호에게, 이용호가 신청인에게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받아 이 중 15억 원은 심○○, 강○○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2억 원은 신청인이 위 약속어음 결제일 이전에 이

용호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할인 이자와 신청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용호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할인받은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심○○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신청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0. 6. 중순경 이용호에게 사실은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용호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7.경 이용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실업이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위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 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인 이○○는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 6.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실업이 ○○증권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한 뒤, ○○증권 주식회사 사장인 박○○에게 주식회사 ○○실업의 전환사채 발행건을 잘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2. 24. 상고가 기각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2000. 1.경 자신으로부터 위 횡령 고소사건의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대검찰청 직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1. 12.경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검·경 인사 5명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한 명인 부장검사 1명은 그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며, 다른 한 명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는 1993. 5. 16. 신청인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에 투자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당시, 전직 국회의원인 조○○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하였고,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전 검찰총장인 김○○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

서 신청인이 평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내용, 즉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나머지 부분, 즉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 권○○, 김○○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단, 피신청인 중앙일보사는 신청인이 이용호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01. 9. 26. 중앙일보 제2면에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정기사를 게재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들이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 광고료 상당액이 피신청인별로 각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용 구
판 사 김 진 현
판 사 이 우 철

〈별지 1-1~2-3〉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취소재판보도문

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

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9.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동아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년 11월호에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권력과 폭력조직의 관계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사는 본지 2002년 3월호에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10.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타 프로그램을 인용 방송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6.자 판결 (2007카합1833)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26일 김○○ 외 1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가처분소송에서 청구인의 반론을 방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1998년 4월 5일 MBC「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서『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김○○의 재산문제,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하여 방송을 한 바 있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7년 3월 24일 MBC「뉴스 후」프로그램에서『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에서의 재정 관련 의혹과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이 새로이 담임목사에 취임하고자 준비 중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새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중소형교회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취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인터뷰는 피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 김○○가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더라도 과연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반론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거나, 위 청구인이 그 행사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인용하면서 그 일부에서는 인용한다는 자막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인용방송이라는 표시를 하였더라도 이 역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카합1833　반론보도가처분

청 구 인 : 1. 김 ○ ○

2. 기독교○○○○회 ○○교회

대표자 당회장 김 ○ ○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청 구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변 론 종 결 : 2007. 7. 12.

판 결 선 고 : 2007. 7. 26.

주　　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젼(MBC-TV)의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화면 상단에 “기독교 ○○○○회 ○○교회 김○○ 담임목사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 김○○에게 1일 일백만(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 김○○의 나머지 청구 및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청구인 김○○와 피청구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청구인이, 나머지는 피청구인이 각 부담하고,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와 피청구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젼(MBC-TV)의

'뉴스 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기독교 ○○○○회 ○○교회 김○○ 담임목사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들에게 매주 각 1억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는 1971년경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이하 '청구인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5. 21:40부터 약 40분간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을 통하여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김○○의 재산문제,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을 한 바 있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7. 3. 24. 22:50부터 약 50분간 위 텔레비전을 통하여 '뉴스 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에서의 재정 관련 의혹과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이 새로이 담임목사에 취임하고자 준비 중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새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중소형교회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먼저, 이 사건 제1방송 중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교인들에게 '(청구인 김○○가)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억 짜리 외제가구를 들여놨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줄게요,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 가세요'라고 발언하는 부분을 인용·방영한 후, 청구인 김○○가 형사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교회의 자금을 상당 부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 사건 제1방송 중 '청구인 김○○가 등기부상 대지 130평에 건평 100평의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목사관을 비롯해 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용·방영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 김○○의 부인 명의로 된 별장(강원도

인제읍 상동리 24-6 대 488㎡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별장'이라 한다)의 건축비 3억 원 및 위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매입한 토지(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69-8 잡종지 1,322㎡ 등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매대금 16억 원 중 8억 원은 청구인 교회의 자금으로 지불되었는데,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 신축과 토지의 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다는 청구인 김○○의 해명을 소개하였다.

⑵ 다음으로,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김○○가 자신이 곧 교회이며 교인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2005도756호)에서는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더라도 청구인 교회와 청구인 김○○는 별개이고, 청구인 김○○가 재정보고를 하면서 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범죄사실을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교단법에서는 일반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교단법정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김○○에 대하여 종교법정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⑶ 또한 청구인 김○○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 청구인의 아들 김△△ 목사가 청구인 교회의 주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 교회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는 청구인 교회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⑷ 마지막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 김○○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수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 교회에서는 청구인 김○○의 일정이 바빠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고, 위 청구인이 형사재판 진행 중이던 2005. 8.경 새로이 전원주택(○○○시 ○○읍 ○○리 ○○○-○ 대 938㎡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구매하였으며, 취재진이 이 사건 전원주택을 찾아 갔으나 위 청구인을 면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방송에서는 ① 청구인 김○○가 교인들에게 '(위 청구인이)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억원짜리 외제가구를 들여 놨다는데,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 가세요'라는 요지로 발언하는 것을 소개한 직후, 위 청구인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위 청구인이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위 청구인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전원주택을 구매하였다는 내용, ② 위 청구인이 위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방영으로 인하여 위 청구인은 인격권 내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장하는 사실 중 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별지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1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을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한편, 청구인 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해 줄 것을 구하나, 반론보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제2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청구인이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일백만(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 김○○에게 인터뷰 등을 통한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청구인은 반론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1방송의 인용이라고 자막표시하였으며, 위 반론보도문 제1항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 여전히 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방송한 바 없음에도, 위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③ 별지1 반론보도문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방영한 부분은 은유적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라고 위 청구인의 반론내용을 이미 방영한 바 있어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피청구인이 취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터뷰는 피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 김○○가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더라도 과연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반론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거나, 위 청구인이 그 행사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방송을 인용하면서 그 일부에서는 인용한다는 자막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인용방송이라는 표시를 하였더라도 이 역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제2방송에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 여전히 청구인 김○○ 또는 그 친인척의 명의로 남아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방송에서 제1방송의 인용방영 직후에 위 청구인이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부분을 방영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교회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이 한창 중'일 때 이를 구매하였다는 멘트를 앞서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원주택을 비롯한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③ 그 밖에 통상적인 종교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곧 교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청구인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그 표현상의 차이에 비추어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이 사건 제2방송에서 함께 방영되었다고 하여 위 청구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에게 별지2 반론보도청구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다만, 청구인 김○○는 별지1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어서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 교회는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의 각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①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 제1번 항목(이하에서는 순번만 언급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제

2방송에서는 청구인 교회의 전 장로인 유○○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방송으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반론을 요구하는 1998. 9. 17.자 합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적 주장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2번 항목 중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제3, 4번 항목의 경우 청구인들은, ㉮ 청구인 김○○가 이 사건 별장을 처음부터 청구인 교회에 기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 청구인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개척교회의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김△△ 목사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나, 청구인 김○○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노3175호) 판결에서는, 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을 배척하고,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별장의 부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 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 없이 자신의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교회의 헌금으로 이를 매입하였으며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김○○라는 사실, 청구인 김○○는 은퇴 후 청구인 교회와는 독립한 개척교회를 지어 김△△ 목사와 함께 목회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교회가 아닌 김△△ 목사의 소유로 할 의사로 김△△을 매수명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확정한 후 이에 기하여 청구인 김○○가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대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적어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내용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위와 같은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부분만을 반론보도를 통해 방송한다면, 이는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거나 해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청구인 김○○가 정당한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수도 있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제5번 항목 중 '김○○ 목사는 재판 진행과정 중 ○○교회의 정관 등 규약에 따라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절차를 거쳐 교회공금을 사용하였고, 이는 교인들의 총의에도 부합하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이 사건 제2방송에서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내용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방송됨으로써 별도로 반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6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제2방송에서 '종교법정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방영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로 보이나, 이 사건 제2방송의 위 표현은 피청구인의 논평 내지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제7번 항목 과 제8번 항목 중 'OO교회나 김OO 목사는 문화방송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는 부분의 경우, 김△△ 목사가 향후 청구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및 취재진이 청구인 교회를 통하여 청구인 김OO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제2방송의 핵심요지로 보이는데, 제7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제2방송의 방영내용과 반론보도 요구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이 사건 제2방송에서도 청구인 교회의 현재 신도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 김OO가 '예배시간'에는 후임 담임목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며 김△△ 목사는 '부담임목사'일 뿐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된 바 없음에도 위 목사의 출연 장면에서 '담임목사'라는 자막이 표시되었다거나, 제8번 항목 중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는 취재요청을 받은바 없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본질적 핵심내용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⑥ 또한 앞서 인용한 별지1 반론보도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은 주로 청구인 김OO 개인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 교회는 청구인 김OO가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익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교회로서는 별지1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김OO가 별지1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어서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을, 청구인 교회는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을 각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것은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OO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및 청구인 교회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박 정 헌
판 사 강 경 표
판 사 김 지 영

〈별지 1〉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2007년 3월 24일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회 ○○교회 담임목사인 김○○의 재산관련의혹, 담임목사 세습 문제 등에 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문화방송은 위 2007. 3. 24.자 방송에서 1998. 4. 5.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중 김○○ 목사가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억 짜리 외제가구를 들여놨다 그러는데, 여러 분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줄게요,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가세요'라고 발언하는 부분 및 김○○ 목사가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방영하였고, 또한 김○○ 목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던 2005. 8.경 남양주시의 전원주택을 새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지목된 서울 중랑구 망우동 182-51 소재 목사관을 비롯하여 서울 ○○구 ○○동 184-1 ○○○○○ ○○○호, 서울 ○○구 ○○동 ○○○-○ 연립주택 1동 ○○○호,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는 1998.경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남양주시 전원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돈이 아니라 김○○ 목사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교회의 수련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4.경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김○○ 목사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 101동 204호에 관하여도 2006. 2.에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김○○ 목사 명의로 된 ○○교회 재산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억 원 상당의 외제가구를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문화방송은 위 2007. 3. 24.자 방송에서 김○○ 목사가 관련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고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관련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거나 신격화된 사람인 양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김○○ 목사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끝. □